

#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6,500,000	16,995,000
일반회계	524,300,000	15,729,000
특별회계	42,200,000	1,266,000
기타특별회계	42,200,000	1,266,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12,000	30,36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1,000	3,63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420,000	102,6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1,000	1,23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2,596,000	77,88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4,000	1,920
치수사업특별회계	534,000	16,0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997,000	179,9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415,000	852,45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694,31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831,91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